

『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 사업으로 주민소득지원 기금이 운영되었으나, 융자실적 저조, 유사사업 중복 지원 등 사업 본래의 취지와 존치목적이 상실되어 사업을 폐지하고, 기금의 운영·관리에 필요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「구미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」의 폐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- 예산조치 :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자금을 일반회계로 귀속하고 상환중인 융자금 및 이자는 일반회계로 세입조치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 및 세무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폐지조례안은

-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의 본래 취지와 존치 목적을 상실하여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로 귀속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,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